신용거래(융자,대주) 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신용거래**는 고객님이 거래소 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증권의 매매거래 시 당사에 일정한 보증금과 담보를 제공하고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의 매수 시 매수증권을 담보로 매수대금 일부를 당사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 융자하는 것으로 통상 증권의 가격상승 예상 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 **"신용거래대주"**는 당사로부터 빌린 증권(담보는 매도대금)으로 매도하고 상환일에 해당 증권등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통상 증권의 가격하락 예상 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 신용거래를 통해 증권을 매매할 경우 고객 자신의 현금으로 거래(100% 증거금 거래)할 때와 비교 시 **신용거래에 따른 추가 위험이 발생하므로 상환능력 및 다른 지출계획을 고려하여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 **(임의처분(반대매매) 위험) 매수증권(담보) 가치가 담보유지비율 하회 시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는 임의처분(반대매매)에 따른 손실 위험**

· **(레버리지 위험) 일정률의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매하게 되므로 시장상황이 예측과 다를 경우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 가능**

※ **<은행등 신용대출과의 차이>** 은행 등 신용대출은 무담보대출로써 채권회수는 민사집행절차

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거래는 담보유지비율 하락시 등에 반대매매를 통해 즉각 채권이 회수됩니다. 또한 신용거래 이자율은 은행 신용대출에 비해 높을 수 있으며, 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므로 **신용거래를 이용한 투자 시 예상 이자비용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상담이 빈번한 숙지필요사항

Q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모든 증권 매매시에 신용거래가 가능한가요?

◦ **일부 증권(예 : 증거금률 100%인 증권)은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증권의 신용거래 가능 여부는 HTS, MT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신용거래 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수량만큼 회사가 반대매매**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 시 전일 종가의 하한가 등으로 반대매매대상 수량을 산정**하며, **처분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처분에 대한 투자손실 방지를 위해 **수시로 담보유지비율을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그 밖에 반대매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 **i)상환기일 미상환 시 ii) 이자·매매수수료·제세금 납부요구에 대한 미납입 시 등의 경우에 반대매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증권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보의 추가납입 요구 없이 반대매매 가능합니다.**

Q4. 신용거래를 만기전에 상환하거나 만기 도래 시 연장이 가능한가요?

◦ 만기 전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만기**의 연장도 가능하나, 연장은 기본융자기간 (30일 또는 60일)단위로 가능합니다.

▣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 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및 신용도 하락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기 미상환 시 **담보증권이 임의처분** 되며, **임의처분으로 모든 주식을 처분한 이후에도 연체금액이 잔존할 경우 연체이자 납부 및 이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담보유지비율 하회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대매매 절차

가. 담보부족계좌의 임의상환(반대매매) 시 전액상환방식 적용

-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수량[X] 산정

$$\frac{[\text{기준가격} \times (\text{보유수량} - X)]}{[\text{신용공여잔고} - (\text{매도가격} \times X)]} = \text{담보유지비율}$$

주식처분수량[X]

$$= \frac{(\text{신용공여잔고} \times \text{담보유지비율}) - \text{기준가격(전일종가)} \times \text{보유수량}}{(\text{매도가격} \times \text{담보유지비율}) - \text{기준가격(전일종가)}}$$

* 매도가격 : 전일종가 대비 15%~30% 할인된 가격 범위 내에서 정한 가격(종목별 상이)

** 종목별 산정가격×매도수량×98.5%(상환금액 보정율)의 금액을 담보부족 해소에 사용(1.5%는 수수료, 제세금, 이자 등 제비용 보정율)

[담보부족에 의한 임의처분(반대매매) 수량산정]

※ 반대매매 체결가가 매도가격 미만으로 되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추가적인 반대매매가 있을 수 있음

<예시>

- 투자원금 400 만원, 신용융자금 600 만원, A 종목 1,000 주를 주당 10,000 원에 매수, 담보유지비율 140%, 현금 0 원

※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신용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	비고

			유지비율	
D 일 장중	10,000 원	10,000,000 원	167%	
D 일 장마감	8,500 원	8,500,000 원	142%	
D+1 일	8,300 원	8,300,000 원	138%	추가담보 납부 요구
D+2 일	8,100 원	8,100,000 원	135%	추가담보미납(30 만원 담보부족)
D+3 일	매도가격을 전일종가(8,100 원) 대비 15% 하락한 가격(6,890 원)으로 산정하여 임의처분수량 : $195\text{ 주} = \frac{(6{,}000{,}000\ 원 \times 140\%) - 8{,}100\ 원 \times 1{,}000\ 주}{(6{,}890\ 원 \times 140\%) - 8{,}100\ 원}$			

나. 신용융자금 미상환 시 임의상환(반대매매)

- 미상환융자금 발생 종목을 만기 다음 영업일에 자동 현금상환 처리하며, 현금상환 처리로 발생된 미수금이 변제될 수 있는 수량을 임의상환(반대매매) 처리함

[신용융자금 미상환 발생에 의한 임의상환(반대매매) 수량산정]

<예시>

- 투자원금 400 만원, 신용융자금 600 만원, A 종목 1,000 주를 주당 10,000 원에 매수, 현금 0 원

※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신용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1) 만기일 가격 > 매수가격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유지비율	비고
만기일	12,000 원	12,000,000 원	200%	
D+1 일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전일종가) 대비 30% 하락한 가격(8,400 원)으로 산정하여, 신용융자금인 600 만원(6,000,000/8,400=715)을 상환하기 위해 715 주를 임의처분수량으로 산정			

2) 만기일 가격 < 매수가격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유지비율	비고
만기일	5,000 원	5,000,000 원	83%	
D+1 일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전일종가) 대비 30% 하락한 가격(3,500 원)으로 산정하여, 신용융자금인 600 만원(6,000,000/3,500=1,715)을 상환하기 위해 1,000 주를 모두 임의처분수량으로 산정하고, 부족금액인 250 만원			

	을 추가납부

※ 임의상환 수수료는 오프라인 수수료를 적용하며, 수수료는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myasset.com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수수료안내 ≫ 매매수수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myasset.com) 또는 **고객센터**(1588-26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 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상품개요 및 특성

가. 대상 고객

◉ 개인 (채무불이행자, 성년후견/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고객, 미성년자, 법인 등 불가)

※ 신용거래대주거래의 경우 관련 교육 이수 및 모의투자를 이행한 자

나. 신용거래 대상 종목

신용거래융자 대상종목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및 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경우는 제외)
신용거래대주 대상종목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 중 회사에서 정하는 종목**

다. 신용거래 보증금율

☑ 신용거래 융자

구 분	기본형	My Choice Loan 한도형	My Choice Loan 종목형
융자45%종목	대용 45%	대용45%	대용45%
융자50%종목	대용 50%	대용50%	대용50%
융자55%종목	현금 25% 대용 30%	-	대용55%
융자60%종목	-	-	대용60%
융자70%종목	현금 35% 대용 35%		현금 35% 대용 35%

☑ 신용거래 대주 : 대주60% 종목(대용 60%), 대주70% 종목(대용 70%), 대주80% 종목(대용 80%), 대주100% 종목(대용 100%)

※ 대용부족 시 현금사용 가능

라. 융자한도

☑ 신용거래 융자

구 분	기본형	My Choice Loan 한도형	My Choice Loan 종목형
마이론플래티넘	10억원	30억원	5억원
마이론골드	7억원		3억원
마이론실버	5억원		2억원
마이론그린	2억원		2억원

☑ 신용거래 대주 : 마이론플래티넘 5억원, 마이론골드 3억원, 마이론실버 2억원, 마이론그린 2억원

마. 담보유지비율

신용거래융자 기본형	신용거래융자(My Choice Loan) 한도형	신용거래융자(My Choice Loan) 종목형	신용거래대주	
			통합	전용
140%	140%	145%	120%	105%

◉ 신용융자(종목형)의 경우 담보유지비율이 다른 증권담보대출, 신용대주(통합) 등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가중평균담보유지비율로 적용합니다.

<산식>

[가중평균담보유지비율 = (신용융자금액*145%+대출금액*140%) / (신용융자금액+대출금액)]

◉ 담보유지비율 미달 시 회사는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합니다. **담보유지비율 미달 및 반대매매 대상 금액 산출 기준은 '계좌 담보유지비율'로 산정**됩니다.

◉ 신용대주(전용)계좌의 경우 담보평가비율은 할인평가방식으로 산정되며, 담보증권 유형별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합니다.

구 분	담보대상	인정비율
주식	KOSPI 200	당일 종가의 88%
	기타 상장주식 (매매거래정지 종목 제외)	당일 종가의 68%
증권예탁증권	상장종목	당일 종가의 68%
채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통화안정증권	시가의 98%
	금융채	시가의 93%
	회사채	시가의 93%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당일 종가의 88%
	기타	기준가격의 70%

바. 융자·대주 기간

☑ 신용거래 융자

구 분	기본형	My Choice Loan 한도형	My Choice Loan 종목형
기간	융자45% : 90일 융자50% : 90일 융자55% : 60일 융자70% : 90일	150일	90일

☑ 신용거래 대주 : 90일(연장가능, 최대 360일)

◉ 상환기일 이전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 담보유지비율 하회 시 추가담보

제공 기간

담보평가비율				추가담보제공기간
신용융자 (기본형,한도형)	신용융자 (종목형)	신용대주 (통합)	신용대주 (전용)	

130% 이상	135% 이상	110% 이상		요구일 포함 2영업일
130% 미만	135% 미만	110% 미만	105% 미만	요구일 포함 1영업일

아. 이자율 및 징수일 등

☑ 지점관리계좌

구 분	마이론 플래티넘	마이론 골드	마이론 실버	마이론 그린
1~7일	6.90%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4.13%)	8.90%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6.13%)	9.70%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6.93%)	9.80%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7.03%)
8~15일	8.90%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6.13%)	9.70%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6.93%)	9.80%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7.03%)	9.85%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7.08%)
16~30일	9.70%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6.93%)	9.80%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7.03%)	9.85%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7.08%)	9.85%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7.08%)
31~90일	9.80%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7.03%)	9.85%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7.08%)	9.85%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7.08%)	9.85%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7.08%)
91~150일	9.85%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7.08%)	9.85%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7.08%)	9.85%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7.08%)	9.85%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7.08%)

☑ 은행연계계좌

구 분	마이론 플래티넘	마이론 골드	마이론 실버	마이론 그린
1~7일	7.10%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4.33%)	9.10%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6.33%)	9.90%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7.13%)	10.00%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7.23%)
8~15일	9.10%	9.90%	10.00%	10.05%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6.33%)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7.13%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7.23%)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7.28%)
16~30일	9.90%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7.13%)	10.00%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7.23%)	10.05%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7.28%)	10.05%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7.28%)
31~90일	10.00%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7.23%)	10.05%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7.28%)	10.05%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7.28%)	10.05%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7.28%)
91~150일	10.05%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7.28%)	10.05%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7.28%)	10.05%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7.28%)	10.05% (기준금리 2.77% + 가산금리 7.28%)

※ My Choice Loan 약정계좌는 상기 이자율에서 0.3%pt 를 인하한다.

※ 보통년은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 적용

※ 신용거래융자의 신용거래기간이 만기연장을 통해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금리는 다음과 같다.

신용거래기간	가산금리
150 일 초과	+0.5%pt
210 일 초과	+0.6%pt
270 일 초과	+0.7%pt

☑ **기준금리 : CD수익률 (※ CD수익률에 대해서는 <참고 : CD수익률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이자 징수일 :** ▨ **신용융자 :** 매월 첫 영업일 ▨ **신용대주 :** 매월 첫 영업일

☑ **이자율 적용방식 :** ▨ **신용융자 : [체차법]으로 기간별 차등적용** ▨ **신용대주 : [체차법]**

자.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 **회사는 신용거래대주거래의 담보로 제공한 매도대금을 이용한 대가로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 **대주매각대금이용료 지급요율 : 예탁금이용료와 동일**

☑ **대주매각대금이용료 지급일 : 매월 첫 영업일**

2.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

☑ 신용거래는 취급 보수 등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 단, 반대매매 시 해당 증권거래에 대한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며, 창구거래 기준의 수수료율 ((5억 초과)0.4%+350,000원 ~ (2억 이하)0.5%)이 적용됩니다.**

☑ 인지세 : 인지세는 고객과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15만원	35만원
	고객부담	-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회사부담	-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3.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신용거래융자 : 매도상환, 현금상환 가능

◦ **(매도상환)** 신용융자 매수 종목을 매도하여 상환

◦ **(현금상환)** 융자금을 현금으로 상환

☑ 신용거래대주 : 매수상환, 현물상환 가능

◦ **(매수상환)** 대주매도했던 종목을 다시 매수하여 상환

◦ **(현물상환)** 대주거래한 동일 종목으로 상환

☑ 상환매체 : 영업점 및 온라인(홈페이지 및 HTS) 상으로 주문·신청 가능

☑ 상환처리일 : 매매에 의하여 상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하고자 하는 날의 전전일 (휴장일 제외)에 회사에 신청하여 동 매매의 결제일에 상환. 현금 및 현물에 의한 상환은 상환 신청(17시까지)한 당일 상환됨

☑ 상환방법 : 수량기준 상환

※ 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발생 및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담보의 징구 및 반대매매 등 관한 사항

◉ **(담보의 징구)** 회사는 **신용거래융자 시** 매수한 주권(증권예탁증권 포함) 또는 상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거래대주 시**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합니다.

◉ **(담보증권 평가)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최근일 기준가격)로 평가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당일 종가로 평가하지 않기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반대매매 발생 사유 등) 회사는 다음의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①고객계좌 예탁현금 → ②담보증권 → ③그 밖의 고객의 증권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른 호가로 *반대매매를 통해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반대매매 절차

가. 담보부족계좌의 임의상환(반대매매) 시 전액상환방식 적용

-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수량[X] 산정

$$\frac{[기준가격 \times (보유수량 - X)]}{[신용공여잔고 - (매도가격 \times X)]} = 담보유지비율$$

$$주식처분수량[X] = \frac{(신용공여잔고 \times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전일종가) \times 보유수량}{(매도가격 \times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전일종가)}$$

* 매도가격 : 전일종가 대비 15%~30% 할인된 가격 범위 내에서 정한 가격(종목별 상이)

** 종목별 산정가격×매도수량×98.5%(상환금액 보정율)의 금액을 담보부족 해소에 사용(1.5%는 수수료, 제세금, 이자 등 제비용 보정율)

[담보부족에 의한 임의처분(반대매매) 수량산정]

※ 반대매매 체결가가 매도가격 미만으로 되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추가적인 반대매매가 있을 수 있음

<예시>

- 투자원금 400 만원, 신용융자금 600 만원, A 종목 1,000 주를 주당 10,000 원에 매수, 담보유지비율 140%, 현금 0 원

※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신용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 유지비율	비고
D 일 장중	10,000 원	10,000,000 원	167%	
D 일 장마감	8,500 원	8,500,000 원	142%	
D+1 일	8,300 원	8,300,000 원	138%	추가담보 납부 요구
D+2 일	8,100 원	8,100,000 원	135%	추가담보미납(30 만원 담보부족)
D+3 일	매도가격을 전일종가(8,100 원) 대비 15% 하락한 가격(6,890 원)으로 산정하여 임의처분수량 : $195\text{ 주} = \frac{\left(6{,}000{,}000\ 원 \times 140\%\right) - 8{,}100\ 원 \times 1{,}000\ 주}{\left(6{,}890\ 원 \times 140\%\right) - 8{,}100\ 원}$			

나. 신용융자금 미상환 시 임의상환(반대매매)

- 미상환융자금 발생 종목을 만기 다음 영업일에 자동 현금상환 처리하며, 현금상환 처리로 발생된 미수금이 변제될 수 있는 수량을 임의상환(반대매매) 처리함

[신용융자금 미상환 발생에 의한 임의상환(반대매매) 수량산정]

<예시>

- 투자원금 400 만원, 신용융자금 600 만원, A 종목 1,000 주를 주당 10,000 원에 매수, 현금 0 원

※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신용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1) 만기일 가격 > 매수가격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유지비율	비고
만기일	12,000 원	12,000,000 원	200%	
D+1 일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전일종가) 대비 30% 하락한 가격(8,400 원)으로 산정하여, 신용융자금인 600 만원(6,000,000/8,400=715)을 상환하기 위해 715 주를 임의처분수량으로 산정			

2) 만기일 가격 < 매수가격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유지비율	비고
만기일	5,000 원	5,000,000 원	83%	
D+1 일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전일종가) 대비 30% 하락한 가격(3,500 원)으로 산정하여, 신용융자금인 600 만원(6,000,000/3,500=1,715)을 상환하기 위해 1,000 주를 모두 임의처분수량으로 산정하고, 부족금액인 250 만원을 추가납부			

※ 임의상환 수수료는 오프라인 수수료를 적용하며, 수수료는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myasset.com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수수료안내 ≫ 매매수수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반대매매 수량 산정 방식)** 반대매매 수량은 다음의 산식으로 결정됩니다.

$$\text{반대매매 수량} = \frac{\text{담보평가금액} - (\text{신용융자금액} \times \text{담보유지비율})}{\text{전일종가} - (\text{반대매매 기준가격} \times \text{담보유지비율})}$$

◉ **(통지방법)** 추가담보 납입요구는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했을 시,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에게 *담보 추가납입 요구 및 징구 없이 반대매매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

◉ **(채무 충당 순서)** 반대매매를 통한 매각대금은 **①처분제비용 → ②연체이자 → ③이자 → ④채무원금 순으로 충당**됩니다.

5.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가. 연체이자 부담

◉ 연체이자율은 **적용 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로 구성되며 **연이자율 [대출별 연체 발생**

시점에 적용 중인 특정 이자율 +3%pt] (최대 연12%)로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융자이자금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징수됩니다

√「융자금/대주수량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만기일의 **익익영업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미상환융자금(대주의 경우 미상환대주수량의 신용대주매도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합니다.

나. 그 밖의 불이익

◉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 **개인 신용점수 하락 및 신용거래 만기 연장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융자·대주 기간 및 연장사항

☑ **신용거래융자 :** 30일 또는 60일 ☑ **신용거래대주 :** 90일

◉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용거래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연장시점에 **최소담보유지비율 이상 계좌**이고, **해당 종목이 신용거래 가능 종목인 경우**에만 고객의 별도 신청(유선, 온라인, 영업점 내방)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7. 신용거래가 신용에 미치는 영향

◉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고객의 개인신용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도 하락시 신용거래, 증권담보융자거래 등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8. 신용거래의 위험성

신용거래는 일정률의 증거금만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투자원금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다음의 신용거래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거래 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1>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률 60%인 경우 60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최초담보비율은 250%(=1,000÷400×100)임

→ 당일 상한가에 매입하여 하한가에 마치고 그 다음날도 하한가로 마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600만원)을 상회하게 됨

<사례2>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률 100%인 경우 현금 1천만원을 담보로 1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대여받은 경우

→ 당일 하한가에 매도하여 상한가에 마치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가 계속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1천만원)을 상회하게 됨

◉ **담보증권의 가격의 변동으로 최소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담보의 납입을 이행하여야 하나 미이행 시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을 부담*합니다.**

◉ 신용거래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을 하회할 경우 고객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고 및 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신용거래가 있는 고객은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합니다.

※ 신용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예시된 사항이 신용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신용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후 동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신용거래대주 시 유의사항

◉ **(호가가격제한)** 신용거래대주 매도주문 시 **직전가 이하의 호가가 금지**됩니다. 다만,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가 가능하며,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 동안에는 **기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호가**할 수 있습니다.

◉ **(유통대주 이용 시 제한사항)**

ㅇ 신용거래대주는 **하나의 증권사를 선택**하여 매매, 보유정보를 집중한 뒤 이용해야 합니다.

ㅇ 고객잔고에 대주하고자 하는 종목의 잔고(현금주식+신용주식)가 있는 경우 **동일 종목의 신규대주 주문이 불가**합니다.

ㅇ 대주 잔고 보유 시 **동일종목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 **(공매도 포지션 보고·공시 제도)**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순보유 잔고(공매도 잔고)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합니다.

※ 보고 또는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fss/kr/acro/nsp/report.jsp)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공매도 관련 유상증자 참여 제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해서는 안됩니다**.

*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한국거래소 공시(공정공시 포함)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

ㅇ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 가액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취득이 허용됩니다.

*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 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

로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등

10. 금융소비자의 권리

가.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①***계약체결일, ②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회사와 고객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서면으로(단, 영업점 방문 필요) ***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14일 이내 청약철회와 약정해지 비교>

구 분	청약철회	약정해지
유 리	대출 기록 삭제	반환 부대비용 없음
불 리	인지세 등 대출 관련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반환	대출 기록 미삭제

나.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 **약관· 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 회사는 필요한 경우 **신용거래융자(대주)이자율, 연체이자율,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신용거래보증금률, 대용증권 납부가능 비율,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납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ㅇ 회사는 **신용거래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 홈페이지, HTS 등에 게시합니다.

ㅇ 약관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관계법규 제·개정 등으로 약관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안내**

ㅇ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점을 만들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 종류 : 신용거래, 증권담보융자거래

ㅇ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ㅇ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ㅇ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 CD수익률 설명서

◈ **CD수익률 설명서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CD수익률 사용기관이 작성하여 일반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말합니다)와 CD수익률과 관련된 금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일반투자자에게 CD수익률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중요내용을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참고자료이며, 그 작성, 설명 및 고지 등과 관련한 책임·의무는 해당 CD수익률 사용기관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Ⅰ. CD수익률의 내용 및 용도

1. CD수익률의 정의

◦ **CD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 **CD수익률**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거래지표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요지표로 지정('21.3월)**되었으며, **중요지표 지정의 효력 발생은 2023년 10월 2일**부터입니다.

2. CD수익률의 용도

◦ CD수익률은 금융회사 등이 금융계약·거래에서 해당 계약·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교환하고자 하는 금액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CD수익률 적용 계약의 범위

대출, 금융투자상품 거래, 보험상품, 신용카드 발급, 시설대여, 할부금융, 어음 할인·인수, 상호부금, 팩토링, 자금예탁, 종합금융회사·단기금융회사 발행 어음 등

(근거: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 §12① 및 감독규정 §13)

Ⅱ. CD 기초수익률의 내용 및 산출기준

1. 기초수익률 및 제출기관의 정의

◦ **기초수익률**이란 금융거래지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기초자료로서 **CD수익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제출기관이** 「CD수익률 산출업무규

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출하여 협회에 제출하는 수익률**을 말합니다.

◦ **제출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항제7호에 따라 **CD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겸영하는 금융투자회사 중 CD거래실적을 기준**으로 **협회가 선정한 10개사**를 말합니다.

2. 적격거래 선정기준

◦ **기초수익률 산출 등에 활용되는 CD거래**를 **적격거래**라 하며 적격거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여야 합니다.

(1) AAA등급 시중은행이 발행한 잔존만기가 45일 이상 165일 이내인 CD거래 일 것

(2) 건별 거래량이 100억원 이상일 것

Ⅲ. CD 기초수익률 산정방법·절차 및 잠재적 한계

1. 제출기관의 기초수익률 산출방법

◦ 제출기관은 **다음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가능한 기초수익률을 제출합니다.

(1) **Level 1 (표준만기* 3개월 발행물 금리)** : 제출기관이 거래한 적격거래로서 표준만기 3개월 발행물 거래의 수익률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

⇩ **(Level 1 산출 불가시)**

(2) **Level 2 (발행물·경과물을 이용한 선형보간 및 평행이동)** : 제출기관이 거래한 적격거래로서 당일 발행물(2·4·5개월), 경과물(2·3·4·5개월) 거래의 수익률을 선형보간 및 평행이동을 이용하여 산출

⇩ **(Level 2 산출 불가시)**

(3) **Level 3 (전문가적 판단)** : 당일 CD 발행 및 거래내역, 은행채 등 유사채권의 수익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기자금시장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수익률 산출

* **표준만기**: 2개월물(45~79일), 3개월물(80~100일), 4개월물(101~135일), 5개월물(136~165일)

2. CD수익률의 산출 절차

◦ 협회는 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수익률 중 **상하 각 1개의 기초수익률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CD수익률을 산출·공시하며 **산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담당기관	내용

기초수익률 제출	제출기관	**16시를 기준으로 기초수익률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기초수익률을 협회에 16시 15분까지 제출**
기초수익률 검증	협회, 제출기관	**미제출기관과 제출한 기초수익률에 왜곡·조작 또는 오류등(이하 '오류등')이 의심되는 제출기관에 확인 및 시정 요구**
CD수익률 산출·공시	협회	**제출된 기초수익률의 상·하 1개씩을 제외한 평균값으로 CD수익률 산출 및 16시 30분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3. CD수익률의 산출의 잠재적 한계

◦ CD수익률 산출은 거래내역과 전문가적 판단기준에 따라 수행되나, **잠재적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CD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한 CD 실거래 부족 등**으로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이 시장의 금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

(2)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 등**으로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이 시장의 금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

IV. CD 수익률 산출과정 오류등의 처리

◦ 협회는 산출업무의 수행 중 **오류등을 발견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오류등이 협회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① (왜곡·조작의 경우) 해당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 중지

② 오류등의 정정 및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수익률 산출

③ ②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④ (①과 ③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위원회 보고

⑤ (중요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2) 오류등이 제출기관의 제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① 해당 제출기관에 대한 신속한 정정 및 이에 따른 기초수익률 재제출 요구

② 정정 및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수익률 산출

③ ②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④ (③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위원회 보고

⑤ (중요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 협회는 산출과정 뿐 아니라 공시 후에도 오류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며, 공시된 CD수익률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공시한 CD수익률에 오류등이 확인된 경우로 다음의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CD수익률을 수정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이미 공시한 CD수익률 수치와 수정 공시하려는 경우의 CD수익률 수치 간 차이가 백분의 3퍼센트 포인트(0.03% point)를 초과하는 경우

(2) 공시한 당일의 17시 30분까지 수정 공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Ⅴ.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상의 중요 사항 변경 및 관련 금융계약에 미치는 영향

1. 중요 사항 변경의 범위

◦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 관련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의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격거래 (2) 기초수익률 산출 및 제출 (3) CD수익률 산출 방법 및 절차

(4) 기초수익률의 수집·검증 방법 및 절차 (5) 예외상황에서의 산출업무 수행절차

(6) CD수익률 공시 주기 및 방법 및 CD수익률의 수정 공시정책에 관한 사항 등

2.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금융계약에 미치는 영향

◦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상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금융계약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D수익률에도 영향을 주어 해당 **금융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

(2)「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 이후에 오류등이 발견되어도 수정 공시가 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금융 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 변동이 발생하지 않음

Ⅵ. 비상사태 및 관련 금융계약에의 영향

1. 비상사태의 범위

◦ **협회가**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여 **산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비상사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제14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CD수익률 산출·공시가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2) 금융시장에 **급격한 시장교란** 또는 **CD거래 빈도의 현격한 감소**가 **지속**되어 CD수익률의 타당성·신뢰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기초수익률 제출을 중단한 제출기관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CD수

익률의 타당성·신뢰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산출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

2.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관련 금융계약에의 영향

◦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해당 중단기간 동안 **사용기관과 고객 간 협의된 대체금리로 CD수익률을 대체**하여 해당 금융계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Ⅶ. 산출업무 중단 시의 비상계획

◦ **비상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CD수익률의 **산출업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1차 심의·의결

(2)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산출업무 중단 사유·시기 등의 공시 및 의견 수렴

(3)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및 반영 여부 결정

(4)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2차 심의·의결

(5) (산출업무 중단이 결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 신고

(6) 산출업무의 他기관 이관 또는 산출업무의 잠정 수행 등 금융위원회의 조치 명령 이행

◦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사용가능한 대체금리(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 반드시 사용기관과 일반투자자 간 합의한 대체금리 기재)

CD수익률 대체금리(예시)	선정 근거(예시)
3개월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급)의 채권평가 5사 평균금리	현재 협회가 고시하는 CD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공시
3개월 은행채 시가평가기준수익률(AAA등급) ± 스프레드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공시
기타 대체금리	사용기관과 일반투자자 간 합의한 금리 예) COFIX, CP(A1, 91일), KORIBOR, KOFR 등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아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절차(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사용기관은 홈페이지에 산출업무 중단 사유 및 내용, 기간 등을 공시하며, CD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수익률 및 선정근거 등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조치를 취한다.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CD수익률 산출중단 사실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전화, 메일, 홈페이지 공시 등).

※ 추가 필요 기재 또는 관리사항

CD수익률 사용기관은 상기 **Ⅰ~Ⅷ의 기재사항**과 함께 CD수익률 **산출방법 및 절차상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변경 사항을 해당 기관의 **CD수익률 설명서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및 CD수익률 설명서를 변경할 경우 그 변경 이력도 기재 또는 관리하여야 합니다.

▣ **CD수익률 설명서의 세부 안내**는 고객센터(1588-260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부록] 대출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신용거래 보증금	▪ 신용거래에 있어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융자 또는 대주를 받을 때 납부하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뜻함. 급격한 시세변동 등으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담보로 취득한 융자담보주식이나 대주매각대금의 담보가치가 하락하거나 해당고객이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수단
담보유지비율	▪ 신용거래시 융자로 매수한 주식 또는 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이나 신용거래 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인한 담보가액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당해 신용거래 융자액 또는 신용거래 대주시가 상당액 이상으로 담보를 유지하도록 정해진 비율
대용증권	▪ 매매주문 시 위탁증거금, 신용거래보증금 및 기타 보증금을 거래소에 납입할 때 거래소가 정한 비율 이내에서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유가증권
반대매매	▪ 주식의 신용거래에 있어서 상환기한 이전에 융자분은 매도, 대주분은 매수하여 차금을 수수함으로써 청산하는 행위
체차법	▪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산정방식의 하나로,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 <예시> 신용거래융자금 5천만원, 대출기간 50일(9.4~10.24까지)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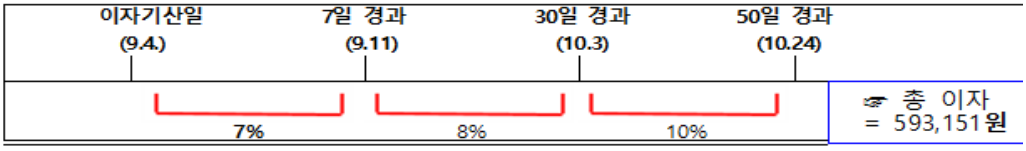
공매도	▪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